

- **(결제)*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



*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지원기관에 별도 납부

- **(사용기한)** 바우처 구입날짜(기업부담금 납부일)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 - ※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
- **(신청접수)** RSS 연구기반공유시스템(rss.auri.go.kr) 회원가입 후 과제 신청

■ 지원규모

- **(시험설계·분석, 60억원)** 중소기업 보유기술,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·연구기관·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(이용료의 70%, 연간 최대 25백만원 이내)
- **(사업화, 30억원)** 인증·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·연구기관·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(이용료의 70%, 연간 최대 10백만원 이내)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(smtech.go.kr)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☎ 044-300-0852)
- 한국산학연합회 (☎ 044-410-3321, 3322)
-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(☎ 042-865-3651, 3454)

지역·산학연 지원

지역·산학연

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-up R&D 지원사업

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-up R&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,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

관련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 **지원대상** : 중소기업

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■ 지원대상

-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-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4개 시·도(전북, 전남, 경남, 울산)의 위기업종(조선·자동차) 중소기업
 -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·도(경북)의 위기업종(철강) 중소기업
 - ③ 지역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회에서 위기징후 “주의 및 심각” 단계지역*의 중소기업
- * '23년 2월 초에 최종 선정 예정('22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설치된 강원, 경북, 대구, 부산, 전남지역만 한정)
- ④ 특별지원지역 :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
 - 강원(북평국가, 북평일반)
 - 전북(김제지평선일반, 정읍첨단)
 - 전남(나주일반, 장흥바이오식품, 강진환경일반, 나주혁신, 담양일반,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, 동함평일반산단, 세풍일반산단, 목포대양산단)
 - 충남(보령 주포제2농공단지)

■ 지원내용

- (1단계) 현장수요형 R&D → (2단계) Scale-up R&D
- ((1단계) 현장수요형 R&D)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(업) 매칭을 통한 1:1 지원
 -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
 - ※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, 시장분석, 수요처 발굴·분석(수요처 연계 제품개발),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, BM모델 개발,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
- ((2단계) Scale-up R&D)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,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

■ 지원규모

- (예산규모) 54억원
- (지원과제) 150개 과제

| 세부과제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| 지원기간 | 모집과제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(1단계) 현장수요형 R&D | 4백만원 | 최대 2개월 | 100 |
| (2단계) Scale-up R&D | 최대 1억원 | 최대 1년 | 50 |

※ 현장수요형 R&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-up R&D 연계지원
 ※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'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(사업·디지털 전환) 수요 중소기업 우대 가점(점) 제공

■ 문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(iris.go.kr)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
- IRIS 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877-2041)

지역·산학연 지원

지역·산학연
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
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관련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 **지원대상** : 중소기업
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■ 지원대상

| 지원유형 | 자격요건 |
|------------|--|
| ①자유공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|
| ②품목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※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산·산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,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|
|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'22년 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3개사 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|
| ④지역스타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'18년~'22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** 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|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·대기업은 참여 불가
 **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(R&D)(2019년), 본 사업(2020년, 2021년, 2022년)을 기지원 받은 기업, 공고일 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,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